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 배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제출해야 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도로점용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관광도로의 지정 및 관광도로정보체계(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신설)

- 1) 도로관리청이 작성·제출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지역 자원 현황 등으로 정함.
- 2)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관광도로명,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주변 관광지·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등으로 정함.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기준(안 제58조제2항제5호 신설)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

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2. ~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 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사업 및 택지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관광도로의 관리계획)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 관광도로의 지정 필요성
4. 해당 관광도로와 인접한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및 결과
5.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6. 관광도로의 경관 제고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광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관광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9. 관광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관광도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3(관광도로의 정보)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도로명,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2. 교통량, 방문 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3. 주변 관광지·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제47조의4(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관광도로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로법」 제105조에 따른 도로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가. 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나. 그 밖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사업 및 택지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u> <u>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u> <u>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u>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
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
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
터 이상인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
수지역개발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
른 단지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신 설>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의2(관광도로의 관리계획)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 관광도로의 지정 필요성
4. 해당 관광도로와 인접한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및 결과
5.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6. 관광도로의 경관 제고 및 조

<신 설>

성에 관한 사항

7. 관광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관광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9. 관광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관광도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3(관광도로의 정보)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도로명,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2. 교통량, 방문 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3. 주변 관광지·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신 설>

연관된 관광정보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 제47조의4(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관광도로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로법」 제105조에 따른 도로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밖에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생
략)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
다.

1. ~ 4. (생 략)

<신 설>

관광도로의 지정, 관광도로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
다.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
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도로
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가. 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차량
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나. 그 밖에 안전사고 방지를

<u><신 설></u>	<u>위해 안전요원의 배치가</u> <u>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u> <u>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u> <u>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u> <u>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u> <u>부 칙</u> <u>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u> <u>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79